#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02

발의연월일: 2025. 5. 26.

발 의 자:전종덕·송옥주·주철현

문대림 • 양부남 • 전진숙

김재원 · 한창민 · 이수진

이병진 • 윤종오 • 정혜경

강경숙・김 윤・김종민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에게 기본적인 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이나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감염병 유행 등의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이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대응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적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이 재 난, 감염병 발생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 항 단서 및 제17조제6항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종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06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항과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를 "사항, 제4항에 따른 검토의 방법·절차등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등기에"로 한다.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공공보건의료사업

제17조제1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재난, 감염병 발생 등의 상

황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에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 ③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 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 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 방 -----. <후단 삭제> 다만, <u>「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u>률」 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 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 신설> 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 하여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 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 항과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 항, 제4항에 따른 검토의 방법 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절차 등 지방의료원의 설립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사업) ①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생략)
  -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 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 료사업"이라 한다)
  - 3. ~ 8. (생략)
  - ② (생략)
-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 공보건의료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 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 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u>지</u> 원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u><신 설></u>

<u>및 등기에</u>
1. (현행과 같음)
2. 공공보건의료사업
3.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보조금 등) ①
<u>지원할</u> 수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
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u>수 있다.</u> ② a. ⑤ (천해과 가유)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국가는 재난, 감염병 발생

등의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사 업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에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